

# 사회복지법인 하트-하트재단

## 제136회 이사회 회의록

### ○ 회의소집 통지 내용

- 통 지 일 : 2020년 11월 13일(금)
- 소집대상 : 이사 11명, 감사 2명
- 통지방법 : 소집공문 이메일 발송 및 문자
- 회의목적 : 2020년 추가경정예산(안) 및 사업계획(안)심의, 2020년 수익사업 추가경정예산(안) 심의, 정관 목적사업 변경(안) 심의

1. 일 시 : 2020년 11월 24일(화) 17:00-18:00

2. 장 소 : 하트-하트재단 4층 회의실

3. 참 석 자

- 이사 : 강훈, 김광희, 김동배, 박영란, 신인숙, 오지철, 이장규, 최충림, 최헌규, 황은혜 (이사 11명 중 10명 참석)
- 감사 : 손민섭 (감사 2명 중 1명 참석)

의장 이사장 신인숙은 정관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게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개회를 선언하다.

의장은 전차 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하여 참석이사의 이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.

### 제 1 호 의안 : 2020년 사회복지법인 추가경정예산(안)

의장은 첨부와 같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(안)이 수립되었음을 설명하다. 추가경정예산은 5,200,000,000원으로 예산대비 17.6% 증가하였으며, 이에 따라 사업의 계획도 변경하였음을 설명하다.

이에 박영란 이사의 동의와 김동배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일치로 본 안이 통과되다.

**제 2 호 의안 : 2020년 수익사업 추가경정예산(안)**

의장은 첨부와 같이 2020년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회계의 추가경정 예산(안)이 수립되었음을 설명하다. 추가경정예산은 558,400,000원으로 수립되었음을 설명하다.

이에 이장규 이사의 동의와 김광희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일치로 본안이 통과되다.

**제 3 호 의안 : 목적사업 변경(안)**

의장은 133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[송파키움센터] 수탁 심사가 있었 으며, 심의 결과 [가락2동 송파키움센터], [송파2동 송파키움센터]를 수탁, 운영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. 재단은 송파키움센터 수탁을 계기로 지역 내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하며, 아동복지법 제44조2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함을 설명하다.

이에 김동배 이사의 동의와 박영란 이사의 재청 및 참석이사 전원의 일치로 본안이 통과되다.

상기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다.

2020년 11월 24일

사회복지법인 하트-하트재단  
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23길 34 (가락동)

의장 이사장 신 인 숙 

이 사 김 광 

이 사 김 동 배 

이 사 박 영 란 

이 사 오 지 철 

이 사 이 장 규 

이 사 강 훈 

이 사 최 충 림 

이 사 최 헌 규 

이 사 황 은 혜 

감 사 손 민 섭 



# 사회복지법인 하트-하트재단 정관변경 신규준문비교표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제4조 (사업의 종류) 이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</li> <li>②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</li> <li>③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</li> <li>④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</li> <li>⑤ 가족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</li> <li>⑥ 해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</li> <li>⑦ 기타 이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</li> </ol>	<p>제4조 (사업의 종류) 이 법인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</li> <li>②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</li> <li>③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</li> <li>④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</li> <li>⑤ 가족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</li> <li>⑥ 해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</li> <li>⑦ 아동복지법 제44조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</li> <li>⑧ 기타 이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</li> </o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운영</li> </ul>